< 정 오 표 >

1. 정정대상 투자신탁 : 유리코리아성장&배당증권자투자신탁[주식]

2. 효력발생예정일(변경시행일): 2018.12.24

3. 주요 정정사항:

- 환매수수료 삭제

[규약]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제41조(환매	환매수수료	①~③ (생략)	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
수수료)	삭제		경우 수익자에게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
			한다. <개정 2018.12.24>
부칙(2018년	-	_	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8년 12월 24일부
12월 24일			<u>터 시행한다.</u>
개정)			

[일괄신고서/투자설명서]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			
요약정보						
I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						
환매수수료	환매수수료	- 9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	<u>없음</u>			
	삭제					
제2부. 집합투	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.					
2. 집합투자	변경에 따른	-	2018.12.24			
기구의 연혁	연혁 추가		- 환매수수료 삭제			
6. 집합투자	환매수수료	나. 종류형 구조	나. 종류형 구조			
기구의 구조	삭제	- 종류별 수수료 및 보수에 관한 사항	- 종류별 수수료 및 보수에 관한 사항			
		<u><환매수수료></u>	<u><환매수수료></u>			
		<u>- 9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</u>	<u><삭제></u>			
11. 매입, 환	환매수수료	나. 환매	나. 환매			
매, 전환절차	삭제	(3)환매수수료	(3)환매수수료			
및 기준가격		빈번한 환매는 높은 환매수수료를 유발합	해당사항 없음			
적용기준		<u>니다.</u>				
		- 9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				
13. 보수 및	환매수수료	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	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			
수수료에 관	삭제	<환매수수료>	<u><환매수수료></u>			
한 사항		<u>- 90일 미만 환매시 : 이익금의 70%</u>	<u><삭제></u>			
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			
3. 집합투자	최근일자 업	라.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	라.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			
재산 관리회						



유리자산운용

사에 관한	데이트	(1) 회사의 개요	(1) 회사의 개요
사항(신탁업		에프앤자산평가㈜	에프앤자산평가㈜
자)		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29(인사동)	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(마곡동)
		<u>☎ 02)721-5300</u>	<u>☎ 02)769-7700</u>

[간이투자설명서]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			
요약정보						
I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						
환매수수료	환매수수료 삭제	- 9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	<u> 없음</u>			

<끝>.